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3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4월 06일

발 의 자: 최재란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강석주, 김성준,
김인제,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왕정순, 유만희,
이민옥,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전병주, 정준호,
한 · 신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지난 2025년 9월 16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위임됨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 구성 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수 규정 명시함(안 제3조제1항).
- 나. 온라인학교 위원 구성 비율 범위 명시함(안 제3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로 한다”를 “수로 한다. 다만,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경우 정수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2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와 관련하여 온라인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비율(학부모·교원·지역)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3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